

보건과학대학원 내규

제정 2010. 09. 27.	개정 2018. 10. 10.
개정 2011. 02. 01.	개정 2019. 12. 02.
개정 2011. 03. 01.	개정 2020. 10. 16.
개정 2011. 04. 13.	개정 2021. 01. 14.
개정 2012. 09. 01.	개정 2021. 11. 02.
개정 2013. 03. 01.	개정 2022. 05. 03.
개정 2016. 01. 15.	개정 2022. 06. 17.
개정 2017. 06. 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과 및 전공의 설치) 보건과학대학원에 다음의 학과와 전공을 설치한다.

보건학과, 언어병리학과, 재활치료학과(물리치료학전공, 작업치료학전공, 운동재활학전공)

제 2 장 입학 및 전공

제 3 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이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
5.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 4 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 ② 서류전형의 평가 항목은 학부전공 관련성, 지원자의 학부 성적, 실무경력으로 구성한다.
- ③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학문적 적성·인성, 수학계획 및 진로방향을 평가한다.
- ④ 입학전형은 아래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계
	학부전공 관련성	학부성적	실무경력	학문적 적성·인성	수학계획 및 진로방향	
보건학과	-	30	10	30	30	100
언어병리학과	10	30	10	25	25	100
재활치료학과	-	30	20	25	25	100

제 5 조(입학전형위원회)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학사과정 동일전공 인정범위) 학사과정 전공이 본 대학원 지원학과와 동일 전공임을 인정하는 범위는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전공 신청 및 변경)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학기말 정해진 기한 이내에 다음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전공주임교수동의서 또는 학과장 동의서
3. 성적증명서

② 전공변경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③ 전공을 변경한 학생은 기 이수과목 중 전입한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

제 8 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건학과 :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언어병리학과 : 전공선택, 보충과목, 논문

재활치료학과 :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제 9 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내·외의 부교수이상의 교원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각종 학술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보건과학대학원장이 자격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10 조(개설과목 최소인원) 개설과목의 최소 등록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소 등록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목에 한해 보건과학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 제 11 조(학점인정)** ① 입학 전에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를 입학 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 보건과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내의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보건과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 ③ 언어병리학과 비전공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보충과목에 한하여 학부에서 개설되는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④ 보충과목의 수강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 제 12 조(비정규등록)**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논문연구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금액은 15%의 금액으로, 수료유예 등록 및 학위수여를 위한 등록금액은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 13 조(전공최소이수학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위논문 제출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8학점 이상, 졸업자격시험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12학점 이상을 자신의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제 14 조(예비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생들의 등록여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신상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종료직전 소정의 양식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5 조(청강)** ① 이 대학원에 개설된 강의를 청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과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청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원 졸업자 : 2학점 당 등록금액의 15%
 2. 기타 : 2학점 당 등록금액의 25%
- ② 청강을 원하는 사람은 당해 학기 초 지정된 기일까지 청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강에 대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 타 대학원 등에 학점이수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 제 16 조(수업평가)** 보건과학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기 종료 직전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재학생들에 의한 수업평가를 실시한다.

제 4 장 장학금

- 제 17 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 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학과
 - 면학장학금 : 학기차별로 각 학기 정규등록생의 10%(소수점이하 반올림) 이내에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에게 해당 학기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전공이 정해진 경우의 지급대상은 학과 최우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대상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차점자로 한다.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2가지 우선순위마저 동일하다면 대상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 ㉡ 총점이 높은 학생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군인학비감면 : 보건학과 공무원 또는 군인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 간호사면허증학비감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각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2. 언어병리학과

- 면학장학금 : 학기차별로 각 학기 정규등록생의 10%(소수점이하 반올림) 이내에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에게 해당 학기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전공이 정해진 경우의 지급대상은 학과 최우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대상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차점자로 한다.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단, 2가지 우선순위마저 동일하다면 대상자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 ㉡ 총점이 높은 학생

이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자격증소지자 장학금 :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해 준다.

3. 재활치료학과

- 면허증(자격증)소지자 장학금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및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 4. 특별장학금 : 대학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학생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5. 외부장학금은 교외에서 유지한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

- 6. 산학연협력장학금 : 본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회사 소속 직원 입학 시 각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회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7.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 한림대학교 교직원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를 감면한다. 세부 감면율은 별표1에 따른다.

- 8. 조교장학금 : 조교로 임용된 자는 별도의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9. 재단산하교직원학비감면 : 일송 학원 산하 의료원 교직원은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제 18 조(장학생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복학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4. 기타 학칙 위반자

제 19 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한다.

제 5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제 20 조(외국어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학과별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 21 조(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교과목은 보건과학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종합시험은 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2 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2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단, 언어병리학과 비전공자의 경우 24학점 이상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직전학기까지 총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23 조(응시절차 및 방법)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은 순서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24 조(출제 및 평가) ①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배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 과정수료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

제 25 조(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금 환불)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 등의 이유로 수료 후 등록을 하고,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한다.

제 6 장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논문지도

제 26 조(논문지도과정 절차) 논문지도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논문지도신청서 제출
2. 논문지도교수 배정
3. 논문지도 ; 개별지도 또는 통합지도
4.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제출
5.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

제 27 조(논문지도 신청자격) 전공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 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28 조(논문지도 신청) ① 논문지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논문구상을 하여 학위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초 논문지도등록을 하고 학위논문지도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논문심사

제 29 조(논문심사 절차)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학과별로 특성에 따라 예비심사를 추가 또는 생략 할 수 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2.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3. 예비심사
4. 본 심사

제 30 조(논문심사 신청자격)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에 전공수료학점 이수예정
2. 직전학기까지의 총평점평균 3.0이상
3. 외국어시험 합격
4. 종합시험 합격

제 31 조(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① 학생은 해당학기 2개월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추천서 1부
 3. 석사학위청구논문 4부

제 32 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보건과학대학원장은 전공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담당한다.

③ 보건과학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33 조(논문의 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 34 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별로 심사한다.

② 예비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보완 사항을 지시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본 심사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제 35 조(본 심사 및 구술시험) ①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논문심사의 판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36 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종합통보서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보건과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과학대학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를 보건과학대학원 학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여부를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보건과학대학원장은 제2항의 의결과 논문의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학위논문 제출) 본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논문을 보건과학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졸업시험

제 38 조(응시자격) ①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4학기이상 정규등록

㉡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2학점 이상 취득

㉢ 외국어시험 합격

② 직전학기까지의 총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 39 조(응시절차)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40 조(시행일자) 졸업시험은 학과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41 조(실시방법) ① 졸업시험의 과목은 보건과학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 과정수료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

④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별표1.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등록금 감면율

기관	대상	감면율(%)	비고
대학교	정규직원	70	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기금직원		
	특수목적사업직원		
	임시직원		
	상기 외 교직원	50	
산단	직원	70	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
	기간제직원		
	전담사업직원		
		상기 외 교직원	50

부 칙

- ① 이 내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1. 2011년 2월 이전 보건대학원과 치료과학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2년 2월 29일까지 통폐합 전 보건대학원 및 치료과학대학원 소속 학과 학생으로 보며, 졸업 및 학위취득에 관하여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보건과학대학원 학사위원회는 보건대학원 및 치료과학대학원 학사위원회를 겸한다.
2. 2012년 9월 1일 이후 재적 중인 학생은 보건과학대학원 소속으로 본다.
- ③ (2011년 2월 1일 교과과정 개정에 따른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2월 1일부로 보건대학원 재학생 및 보건과학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④ (2011년 3월 1일 내규개정에 따른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로 보건과학대학원 재학생 및 보건대학원, 치료과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⑤ (2011년 4월 13일 내규개정에 따른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4월 13일 부로 보건과학대학원 및 보건대학원, 치료과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⑥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내규개정에 따른 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변경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변경 내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변경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변경 내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변경 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변경 내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이 변경 내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17조 3. 재활치료학과 면허증(자격증)소지자 장학금, 17조 6. 산학연협력장학금)
- ⑮ 이 변경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17조 7.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 ⑯ 이 변경 내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